



109

主

題

病院司牧

***** 제 20 차 세미나 초록 *****

109 149

演題

병원사목의

새로운 방향

109
서 요셉 신부

< 가톨릭의대 교목실장 >

New Trends of
Hospital Apostolate

Rev. Joseph Cahill

Chaplain, Catholic Medical College

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의 주제를 암시하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다.

작년에 어떤 본당신부가 조그마한 사목회합에서, 폐암에 걸려 죽어가는 26세의 기혼부인을 병원으로 방문했던 일을 보고한 적이 있다. 그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다음달에는 어떠한 태도로 병자를 대해야 하느냐하는 문제를 두고 동료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였다.

그는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그 부인이 낫지 못하고 이듬해에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부인은 매우 행복하고 활달한 성격이며 유모어가 풍부하고 혈기왕성한 타입이었다. 그러나 그 환자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 그는 극도로 긴장해 있었고 그녀를 병실에 남겨놓고 병원문을 나설때는 너무도 착찹한 기분이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부인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나는대로 몇마디 적어 두었는데, 그 사목회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신부와 환자가 나눈 대화를 면밀히 검토했을 결과, 그 젊은 부인이 멀지 않아 죽으리라는 심각한 현실을 화제에 올리지 않으려고 그가 무척 애썼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모두 간호원들 얘기, 음식이나 통증,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또는 퇴원 후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따위로 빙빙 돌고 있었다. 그는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그 문제를(부인의 죽음) 회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자신이 써서 제출한 보고서를 반복해서 읽는 동안에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뚜렷이 깨달았다. 그리고 동료들과 토의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환자를 다루는 사목방법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그 부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준다.

첫째로 원목이란 특수사목이고 그 사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알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둘째로 원목활동 자체가 특수한 신학적 교육이라는 것이다.

원목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하기 전에 현재의 원목활동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목은 환자들의 영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어려운 위기에 처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를 특별히 잘 돌봐주어야 하며 특히 가톨릭병원에서는 신자인 환자에게 영신적 위안과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성당에 갈 수 없으므로 병원안에서 미사에 참석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받을 기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 외에 환자의 상태가 좋할수록 원목신부나 수녀는 더욱 충실히 돌보아서 종교에서 위안과 도움을 얻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죽어가는 환자의 경우 원목을 맡은 자의 역할은 그를 격려해서 희망을 갖게하며 하느님 앞으로 갈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인 환자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면 많은 전교를 할 수 있다. 몸이 건강할 때 종교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도 입원을 하면 자신의 생명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이때 환자들이 원목신부나 수녀와 대화를 할 기회를 가지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을 갖게된다. 이때는 물론 환자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원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한 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직자들은 죽음에 대한 신앙을 가졌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으므로 환자가 죽어갈 때나 죽을 위험이 있을 때 환자와 그의 보호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의사가 환자를 더이상 도울 수 없을 때 원목신부나 수녀가 그 환자를 책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말이지만 우리는 흔히 신부와 의사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의사가 환자의 신체를 치료해 준다면

신부는 환자를 영신적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인 원목을 행하려면 원목을 맡은 자가 병원의 치료팀원(TEAM MEMBER)가 되어야 한다. 간호원이나 방사선과 기사나 물리요법가가 병원의 치료 TEAM MEMBER가 되는 것같이 원목신부나 수녀도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에 참여해야 한다.

의학의 초창기에, 사람들은 신체적인 병의 원인이 영신적인 데 있다고 생각해서 병을 영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했다. Hippocrates가 살아있을 당시에 사람들은 간질병을 천벌이라고 생각했으나 Hippocrates는 그것을 빙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의학은 무한한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병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 종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많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영신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의사와 똑같이 병이나 질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이셨다. 병든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인간이란 신체적 존재와 영신적 존재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신체와 정신이 서비스럽게 엉켜 서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심리학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 신체적인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죄의식이나 공포감 또는 분노가 위궤양이나 손발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병의 원인이 오직 신체적인 데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심리상태는 병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 만일에 환자가 하느님이 내린 별을 받고 있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치료의 효과는 늦어질 것이다. 반대로 밝은 마음으로 자기의 병을 받아들인다면 치료의 효과는 훨씬 빠르게 될 것이다. 또 회복의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자신의 병을 신앙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환자를 돌봐주는 것은 훨씬 쉬울 것이다.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에 있어서 영신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전까지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치료자가 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 성직자는 사람의 영혼만을 구하려 했고, 병원을 많이 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연히 짓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의 원목 활동을 돌아보면 본국에서도 원목을 맡은 신부는 거의 나이가 어린 신부가 아니면 은퇴한 노신부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톨릭 병원이 많으면서도 전문적으로 원목을 맡은 신부나 수녀가 적은 것으로 보아 교회에서 원목을 중요시 한 것 같지 않다. 또, 병원내에서 원목실의 위치가 어디인가, 성당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목실의 예산이 얼마인가, 교구나 수녀회에서 신부나 수녀를 모집하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를 보면 병원당국에서 원목활동을 소홀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병원측도 자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내 생각으로는, 성직자들이 원목을 맡지 못하거나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성직자 자신들이 환자의 치료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직자들은 원목을 병원치료의 필수적 요소라기보다 가톨릭 병원의 특혜라고 생각한 것이다. 특별환자가 고기반찬을 더 받듯이 가톨릭 병원에 입원한 신자는 원목실의 service를 부수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문제는 원목을 맡을 신부나 수녀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미국에는 임상사목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목을 전문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50년 전에 Boisen이란 목사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약 2년 후에 퇴원했지만 그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그를 찾아온 목사가 환자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기술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Boisen목사는 얼마 후에 자신이 입원해 있었던 병원의 원목을 맡아서 목사와 신학생을 위한 임상사목교육을 시작했다. 그는 환자의 입장이 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원목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다. 더구나 병원은 성직자들이 죄와 구원의 신비를 배울 수 있는 이상적인 훈련소라 할 수 있다. 신학교에서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인간의 죄스러운 처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50여년 동안 미국의 임상사목교육제도는 많이

발전했고, 요즈음에는 큰 병원마다 이런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제도는 의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임상사목교육을 받은 성직자나 신학생들은 의사나 간호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서로 배우고, 이해하게 되었다. Kubba Ross라는 의사가 쓴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임상사목교육을 받고 있던 목사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Kubba Ross 의사에게 고문의사로 같이 일해보자는 제의를 했다. Kubba Ross 의사가 쓴 책은 ("On Death and Dying") 바로 그 목사가 임상사목교육 실습생들이 연구한 결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임상사목교육 덕분에 원목을 맡은 성직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의식이 생겼으며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게되었다. 우리도 원목을 보다 활기있게 발전시키려면 원목신부나 수녀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요즈음, 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성직자 특히 신부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병원에서 신부나 수녀를 원목으로 이끌려고 하면 다른 분야의 사목과 경쟁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목의 필요성을 전보다 더욱 절실히 느껴서 사람을 이끌어 당길 수 있는 힘과 매력을 지녀야 하겠다.

나는 원목이 앞으로 두 가지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service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 신학적 교육의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의학교육과정에 인턴훈련이 있는 것 같이 신학교육과정에도 실습이 필요하다. 병원마다 임상사목교육제도가 있다면 실습생들의 많은 참여로 원목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신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인 사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민하고 있는 환자, 위기에 처한 인간을 접촉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목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의 첫머리에 얘기한 실례가 증명해준다. 즉 죽어가는 환자를 도웁기 위해서 신부는 자기자신을 잘 이해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목기술을 배우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직자 자신들이, 원목이 병원의 치료과정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닫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러므로 병원의 치료 TEAM MEMBER가 되려
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

임상사목교육은 원목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성직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므로 많은 도움이 된다.
가톨릭 병원마다 이런 제도를 실시하면 환자와 직원들에게 뛰어난 사목적 service를 주면서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17 면에서 >

앞으로 国家的인 医療保健組織網設置에 있어서는
国公立이나 民間의 区別없이 現存 機關을 中心으
로 이를 補強 發展시키는 것이 時間의으로나 經
濟의으로나 또는 人的 資源의 活用에 있어 效果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面에 開業하고 있는 医師가
있는 경우 面 保健診療의 機能을 위하여 다시 医
師를 配置할 것이 아니라 그 医師로 하여금 面의
保健診療을 担当하도록 委任하여야 할 것이다.

發展하는 社會속에서 医療保健은 個人에서부터
모든 国民으로 家族에서부터 地域社會로 拡大되
었고 村落에서 都市에 이르기까지 一貫된 伝達體
系의 樹立이 期待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 医療人은 어느 時代보다도 어려
움과 同時に 큰 任務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24 면에서 >

7. 진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규정
제 39조(서류의 보존기간) 기관장 또는 학교 경영자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의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40조(서식) 법·령 및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청구서, 신청서, 신고서등의 서식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공무원 및 교직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8년 10월 31일까지 하되, 피보험자 카아드의 작성제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교직원인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자격취득시의 보수월액신고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8년 10월 31일까지 하되, 동년 9월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피보험자 건강진단 카아드의 대체) 이 규칙 시행당시의 공무원 및 교직원에 대해 피보험자 건강진단 카아드는 연금법에 의한 건강카아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